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재정비에 관한 의견청취안

의 안 번 호 1358

제출년월일: 2016년 8월 12일 제 출 자: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경관계획은 「경관법」 제7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며, 동법 제15조에 의거 기존경관계획('09~'10수립)을 변화된 여건과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 맞게 재정비하고자하는 사항임.
- 나. 서울시는 2009년과 2010년에 기본경관계획 및 특정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중이며, 「경관법」제15조(경관계획의 정비)에 따라 5년마다 경관계획에 대해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고자 함.
- 다. 「경관법」 제11조제3항 규정에 따라 '서울특별시 경관계획' 재정비(안)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함.

2. 추진경위

○ '07.05.17 : 경관법 제정

○ '08.05.29 :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정

○ '09.04.01 : 서울시 기본 및 시가지경관계획 수립

○ '10.09.01 : 서울시(수변·자연녹지·역사문화)특정경관계획 수립

○ '14.02.07 : 경관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 시행

- '14.05.14 :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전부개정 공포·시행
- '14.05.23 : 서울시 경관계획 재정비연구 용역 착수
 - 용역 착수보고회(´14.6.19), 중간보고(2회), 전문가 자문 회의 등 (약20회)
- '16.07.14 : 공청회 개최

3. 주요내용

- 가. 기존 경관계획의 틀과 내용을 다듬고 그동안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, 도시의 다양한 요소들 간의 배려와 조화를 통한 경관 관리·형성방안을 마련함.
- 나. 경관계획 재정비 세부 내용
 - 서울시 경관계획의 미래상 및 경관 유형별 목표 제시

미래상

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



○ 경관구조별 기본구상

- (재정비)10개로 구분돼 복잡했던 경관구조를 역사도심권역, 자연녹지축, 수변축, 경관자원거점으로 재편해 경관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함.
- ① 역사도심권역 :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심활력과 자연성 조화
 - 한양도성 및 문화재 주변 역사경관특성 관리
 - · 주요 업무상업지, 청계천변 가로공간 활력 제고
 - · 북악산, 남산 주변 저층주거지 자연경관특성 관리
- ② 자연녹지축 : 내·외사산 주변의 구릉지 특성 유지 및 자연녹지 확산
 - · 북한산, 관악산 등 산 주변 구릉지 자연특성 유지
 - · 한강 및 시가지에서 주요산 조망 유도
 - · 내·외사산과 연계하여 시가지 녹지네트워크 구축
- ③ 수변축 : 자연성과 조화되는 다양하고 역동적인 수변경관 형성
 - · 수변 구릉지, 배후산 조망 등 수변 자연성 유지
 - · 통경축, 보행축을 통한 열린 수변경관 유도
 - · 천과 녹지·공공공간의 일체적 조성으로 자연경관거점화
- ④ 경관자원거점 : 경관자원의 면적관리를 통한 지역별 경관거점화
 - · 경관자원간 연계를 통한 지역별 경관거점으로 조성
 - 경관거점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 유도

○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

- (재정비) 18개로(기본+중점관리구역) 세분화됐던 경관 관리구역을 3개(역사도심, 한강변, 주요 산 주변) 중점 관리구역으로 단순화함.
- ① 역사도심 중점경관관리구역
 - · 내사산 자연성 및 저층주거지경관 유지
 - 한양도성 상징성 고려 및 역사문화재와 조화
 - 활력 있는 가로경관과 더 가까운 친수경관

②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

- · 지역별 특성을 유지한 수변경관의 다양성 제고
- · 배후산 조망을 배려하여 수변경관의 자연성 보호
- 수변 접근성 제고 및 한강조망 기회 확대

③ 주요산 주변 중점경관관리구역

- · 주요산 고유의 지형특성인 구릉지 지형·지세 보호
- · 산주변 자연녹지 유지·확산
- · 저층주거지 특성을 고려한 주변지역과의 조화

기존 경관기본관리구역(2009~2010)

면적 : 약 350㎢(서울시 면적의 약58%)

재정비 중점경관관리구역(2016)



면적 : 약 116㎢(서울시 면적의 약18%)

역 사 도 심 | 19.58km² (서울시 면적의 3%) 한 강 변 | 55.23km² (서울시 면적의 9%) 주요 산 주변 | 41.22km² (서울시 면적의 6%)

○ 실행계획

- 경관사업 : 10개 경관사업 유형을 제시하고, 목적에 따라 시 주도. 자치구 협력, 시민공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
 - · 경관심의 : 관리구역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시민 자율평가 및 경관심의로 공공자산인 경관에 대한 배려 유도
 - · 시민참여 : 민관파트너쉽 구축을 통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민 역량 강화

4. 공청회 결과(주요내용)

○ 일 시 : 2016. 7. 14(목)

○ 장 소 :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

의 견	검 토 의 견	비고
○기존계획의 한계를 근거로 한 재정비 사항 명시	○기존계획의 의의 및 한계검토 ○기존계획의 한계에 근거한 재정비내용 정리 보완	반영
○경관심의 대상 설정 기준 명확화	○ 중점경관관리구역별 구역설정 근거 및 경관심의 대상 설정 근거 보완	반영
○시민공감형성 및 시민역량강화 방안 필요	○도시경관 시민강좌 프로그램 등 시민 교육방안을 포함한 단계별 시민공감대 형성 방안 보완	반영
○행정적 차원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공무원 역량 강화 필요	○경관심의 매뉴얼 작성 및 공무원 교육 방안 보완	반영
○경관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및 연계성 검토	○ 관련계획의 기본방향을 반영하여 가이 드라인 작성 ○ 경관심의시 관련계획의 내용을 반영하 도록 체크리스트 보완	반영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경관법」제7조 및 제9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※ 작성자 : 도시관리과 도시경관팀 서신석(☎2133-8393)

따로붙임 1.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재정비(안) 1부(별도송부).

2.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재정비(안)PPT 1부(별도송부). 끝.